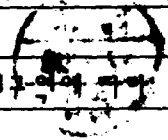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분류기호<br>문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수 410- 523          | (전화번호 962-9819) | 도청공문<br>호 수<br>제청사항 |
| 처리기간   | 83.8.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서행일자   | 83.8.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보존연한   | 영구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보조기  | 부시장<br>상하수국장<br>적수과장 | 시정개발담당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기안책임자  | 정현종                  | 83.8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경유   | 국안참조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  | 경계하천의 관리권 협의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(제1안)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수신 내부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동건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. 적수 410 -40 (83.1.22)호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적수 417 -167 (83.3.9)호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적수 410 -247 (83.4.12)호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적수 417 -653 (83.7.18)호의 한강종합개발에 따른 협의사항과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관련으로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. 한강종합개발에 따라 경기도와 당시의 경계를 이루는 한강개발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공구 및 10공구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와 수사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며,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경기도 적수 417-653 (83.7.18)호로 당시에 협의 요청한 내용은 당초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당시의 검토안과 일치 하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3. 1공구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제6조 2항에 의하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여 경계하천 관리권을 아예와 같이 협의하고 10공구는 동건과 같이 행정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|
|--|--|
| 구역 경계에 따라 양시도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합니다.  |  |
| 가. 협의 구간   |  |
| 나. 협의내용  |  |
| 협의구간에 대하여 하선변상 경기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<br>계산 사항에 대하여 차후 또는 당시에서 권리 외부를 부담.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다. 기간  |  |
| 별도의 재협의시까지   |  |
| 첨부 관계도면 7부.  |  |
| (계 2안)   |  |
| 수신 건설부장관   |  |
| 참조 수정과장  |  |
| 계별 동 건   |  |
| 1. 당시의 환경종합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당시와 경기도내의 행정<br>구역상 경계를 이루는 한강의 1, 10공구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관리권계를<br>협의한 바 |  |
| 2. 10공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양시도에서 행정구역에 따라<br>계속 관리토록 하고  |  |
| 3. 1공구에 대하여는 하선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제16조 2항에 따라<br>아매와 같이 관리권에 대한 협의를 하였기 보고 합니다.                |  |
| 4. 협의내용  |  |
| 가. 협의구간  |  |
| 1안 3항의 가, 나, 다 어거시행  |  |
| 첨부 관계도면 7부   |  |
| (계 3안) 공 고 안   |  |
| 공고 계 호   |  |



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공고일시 | 1982. 8. 16 | 제 206 호 |
| 발령장  | 행정부장        | 인주당장관   |
|      | 전 결         |         |

경계 하천의 권역권 협의 공고

하천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간의 영등포역상 경계 하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계하천 권역권에 대한 협의를 하였기 여에 공고합니다.

아 래

- 1. 하천명 : 안 강
- 2. 구 간 : 남기도 - 행주대교단 구간
- 3. 내 용 : 협의 구간에 대하여 하천법상 경기도 지사 권한에 속하는 계분 사항에 대하여 차후로는 서울특별시에서 권역 의무를 부담.
- 4. 기 간 : 별도의 제한의시까지

1983. 8.

서울특별시

경성백

(제 4안)

수신 공보관

계분 공보 및 시보 게재 의뢰안

1. 별첨 공고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간의 경계 하천 권역권에

대한 협의가 있었기 관보,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공고안 1부. 끝.

(제 5안)

수신 경기도지사

참조 치수과장

계분 동 건







